



제437회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청소년성보호법의 개정사항 반영 등〉

■ 박균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223호)

2026.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박 혜 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내용	2
2.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1항제4호 인용 조문 개정	6
3.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제3항 및 제5항 인용 조문 삭제	8
4. 신상정보 등록 대상 제외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2조) 관련	9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박균택의원 등 16인

나. 제 안 일 : 2025. 9. 24.

다. 회 부 일 : 2025. 9.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0년 5월 19일 개정되어 신상정보의 공개에 관한 조문이 변경되고, 같은 해 6월 2일 재차 개정되어 일부 범죄의 벌금형이 삭제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및 등록정보의 관리에 관한 조문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전 규정들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여 법률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제3호 개정).

I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현행법 중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조문(제42조제1항) 및 등록정보의 관리 조문(제45조제1항제3호)이 인용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의 “제49조제1항제4호”를 “제49조제1항제3호”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제3호).
- 또한 현행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를 삭제하고(안 제42조제1항), 종전의 「청소년성보호법」(법률 제17338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의 법을 말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42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안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등록기간”이라 한다)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이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 15년 4. (생략) ② ~ ⑧ (생략)	----- ----- ----- ---. ----- ----- ----- -----. 1. 2. (현행과 같음) 3. ----- ----- ----- ----- -----제49조제1항제3호----- ----- 4.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상정보 등록 대상 제외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38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현행	개정안
	시행 전의 법을 말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1항제4호 인용 조문 개정

- 「청소년성보호법」은 2020년 5월 19일 개정으로 제49조제1항제3호가 삭제되고, 같은 항 제4호가 제3호로 변경되었음.

개정 전 (청소년성보호법 제16923호)	개정 후 (청소년성보호법 제17282호)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 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 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략)	1~2. (생략)
3.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삭 제>

개정 전 (청소년성보호법 제16923호)	개정 후 (청소년성보호법 제17282호)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u>4.</u>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u>3.</u>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따라서 개정안에서와 같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제3호 본문이 인용하고 있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제49조제1항제4호”를 “제49조제1항제3호”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함.

3.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제3항 및 제5항 인용 조문 삭제

- 「청소년성보호법」은 2020년 6월 2일 개정으로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벌금형이 삭제되었음.

개정 전 (청소년성보호법 제16622호)	개정 후 (청소년성보호법 제17338호)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u>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u> 처한다.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u>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u>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u>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u>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u>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u> 처한다.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4. 신상정보 등록 대상 제외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2조) 관련

□ 부칙 제2조는 종전의 「청소년성보호법」(법률 제17338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의 법을 말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42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당해 부칙을 두지 않을 경우, 종전의 「청소년성보호법」(법률 제17338호)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데, 이는 수범자에게 침익적인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구법에 대해 형성된 신뢰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부칙을 두는 것이 타당함.